허위 공문서

식품의약품안전처

전라남도 위생점검

수 신	관내 전 식료품(냉장,냉동) 제조시설
(경유)	
제 목	식료품(냉장,냉동) 제조시설 식품위생 필수품목 구비알림

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식료품(냉장,냉동) 제조시설 식품위생 필수품목 변경에 따라,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본 도청에서는 관내 식료품 제조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특히 올해부터는 「식품위생법」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육안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, 디지털 기반의 과학적 위생 관리 시스템 도입이 권고 및 의무화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필수 비치 품목 및 준수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법적 근거

「식품위생법」 제3조(식품 등의 취급 기준)

「식품위생법」 제44조(영업자 준수사항) 및 동법 시행규칙 [별표 17]

■ 주요 내용

가. 적용 대상: 관내 식료품(냉장,냉동) 제조시설

나. 필수 비치 및 설치 기준

ATP 오염도 측정기

조리 기구 및 종사자 손의 미생물 오염도를 현장에서 즉시 측정하고 수치로 기록 관리할 것.

라디오노드365(클라우드): 산업용 IoT 스마트 센서와 클라우드 모니터링 통해 온도, 습도, 가스 농도 등 현장의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 측정시스템(Radionode365)을 통해 데이터 측정, 분석, 알람을 제공하는 스마트 환경안전 실시간 데이터 대시보드, 보고서, 긴급 알람(전화, 문자) 기능을 제공 및 관리할 것.

다. 행정 사항

점검일자: 2026. 04. 20 (필요 시 조정)

점검 시 해당 장비 미비치 및 기록 누락 업체는 「식품위생법」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

현장 점검 시 실시간 데이터 로그(Log) 기록 확인 예정입니다.

※ 지원 조건 및 준수 사항

비치 기한: 2026. 04. 20. (월)까지

지원 방식: 지정된 정부 공인 업체를 통해 선구매 후 증빙 서류 제출. (거래내역서, 제품인증서)

예산 소진 시까지 전액 지원 (※ 지원율 변경 시 별도 공지)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위조 사례

수신자 : 관내 전 식료품 제조시설

담당부서: 식품안전관리과 주무관: 이 식품위생과장: 이 전결 2026.03

전화번호: 010-2534-6185 FAX: 062-602-1430

우 (61012)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

허위 공문서

빛나는 발걸음, 새로운 길

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 신 수신자 참조

경 유

제 목 식료품(냉장, 냉동) 제조 및 유통시설 식품위생 필수품목 구비알림

1.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「식품위생법」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[별표 17]에 따라, 식료품(냉장·냉동) 제조 및 유통시설의 위생관리 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가. 적용 대상: 관내 식료품(냉장·냉동) 제조 및 유통시설

나. 주요 개정 사항: 필수 비치 품목 추가(ATP 오염도 측정기, 온도·습도 측정 장비)

다. 점검 기간: 2026. 4. 1. ~ 2026. 4. 23. **(필요 시 조정)**

3. 미비치 시 「식품위생법」 제101조에 따라 과태료(최대 300만원)가 부과될 수 있으니, 붙임의 안내에 따라 기한 내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붙임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개정 법령 조문 발췌 1부.

붙임 2. 필수 품목 상세 기준 및 설치 방법 1부.

붙임 3.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방법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위조 사례

수신자 : 관내 전 식료품 제조 및 유통시설

담당부서 : **식품안전관리과** 주무관 : **오영근** 식품안전과장 : **이수혁** 전결 2026.04.01

전화번호 : 010-2509-9657 FAX : 051-602-6245

[47537]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4-6층

허위 공문서

[붙임 1]

관련 법령 조문 및 행정처분 기준

1. 관련 법령

- 「식품위생법」 제44조(영업자 준수사항) 제1항: 식품접객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,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「식품위생법 시행규칙」 [별표 17]: 식료품(냉장·냉동) 제조 및 유통시설의 위생관리 기준에 따라 필수 품목(디지털 기반 모니터링 체계)을 구비하여야 한다.

2.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

- 기반 법령: 「식품위생법」 제101조(과태료)
- 처분 세부 내역:

위반 사항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필수 위생 품목 미비치	과태료 100만 원	과태료 200만 원	과태료 300만 원
위생관리 기록 누락/허위	영업정지 15일	영업정지 1개월	영업취소 및 폐쇄

위조 사례

허위 공문서

[붙임 2]

필수 품목 상세 규격 및 설치 방법

1. 장비별 상세 규격

- **가. ATP 오염도 측정기 (Handheld Type)**
  - 용도: 조리 기구 및 미생물 오염도를 현장에서 즉시 수치화(RLU)하여 관리.
  - 규격: 데이터 5,000건 이상 저장 및 PC 연동 가능 모델.
- **나. 라디오노드365 IoT 스마트 온도·습도 측정 장비**
  - 용도: 냉장·냉동고의 온도 및 습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클라우드 서버(Radionode365 등)로 전송.
  - 규격: 정전 및 이상 온도 발생 시 즉시 긴급 알림(전화, 문자) 기능 포함.

2. 설치 기준 및 운영 방법

- 가. ATP 오염도 측정기: 교차 오염 방지 및 정밀 관리를 위해 **각 제조공간(구획)마다 최소 1대 이상** 비치하여야 함.
- 나. IoT 스마트 온도·습도 측정 장비: 보관 온도 이탈 방지를 위해 **냉동, 냉장창고 내 분리된 칸(섹션)마다 최소 1대 이상** 설치하여야 함.
- 다. 운영 의무: 모든 측정 데이터는 실시간 로그(Log) 기록으로 유지되어야 하며, 점검 기간(2026. 4. 1. ~ 2026. 6. 30.) 내 현장 확인에 대비하여야 함.

위조 사례

허위 공문서

[붙임 3-1]

위생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신청서

신청인	성명(대표자)		사업자번호	
	업소명(상호)		연락처	
사업장	소재지			
환급계좌	은행명		계좌번호	
	예금주		연락처	

[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]

- 수집 항목: 성명, 연락처, 사업자번호, 계좌정보 등 신청서 기재 사항
- 수집 목적: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금 지급 및 대상자 확인
- 보유 기간: 지원사업 종료 시까지 (법령에 따른 보존 기간 준수)

본인은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며,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신청인: (인/서명)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

위조 사례

허위 공문서

[붙임 3-2]

지원사업 신청 안내

1. 신청 및 접수 방법

- **접수처:** 식품안전관리과 사업 담당자
- **방법:** 신청 접수의 신속성을 위하여 위 신청서(붙임 3-1) 및 구비 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담당자 직통 번호(010-2509-9657)로 문자(SMS/MMS) 또는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

2. 지원 내용 및 지급 절차

- **지원 규모:** 지정된 정부 공인 업체를 통해 장비를 선구매한 경우 구매 대금의 100%(전액) 환급
- **지급 절차:** 서류 접수 → 장비 설치 확인 및 심사 → 환급금 입금(7영업일 이내)

3. 구비 서류 목록

-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신청서 1부.
- 지정업체 발행 거래내역서 및 제품인증서 각 1부.
- 환급금 수령 희망 계좌 통장 사본 1부.

4. 유의 사항

- 사업 수행 지정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시 변동되므로, 반드시 신청 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현시점의 '승인 업체 정보 및 담당자 명함'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되며,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.

끝.

위조 사례